

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4.10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기준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하고자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수방단은 통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함. (안 제3조제1항)
- 나.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 함. (안 제4조제1항)
- 다.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1)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
 - 2)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
 - 3)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생략
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조직) ①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.

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민방위대”는 “수방단”으로 본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단장) ①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조직) ①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</p> <p>2.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</p> <p>3.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제1항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자</p> <p>2. 고교생 및 대학생</p> <p>3. 경찰관 및 군인</p> <p>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</p>	<p>제3조(조직) ①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민방위대"는 "수방단"으로 본다.</p>
<p>제4조(단장) ①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단장) ①수방단의 단장은 통민방위대장이 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